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8.

발의자 : 정진욱 · 김윤 · 안도걸
정준호 · 오세희 · 양부남
이개호 · 조계원 · 박균택
박지원 · 이재관 · 최혁진
조인철 · 신정훈 · 장철민
박용갑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,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,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,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

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,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(안 제 121조의26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개”를 각각 “5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·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